

의안 번호	2481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	---

1. 검토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 10. 2.(목)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5. 10. 2.(목)
- 다. 위원회 심사일자 : 2025. 10. 16.(목)

2. 제안이유

- 표창장의 인사위원회 심사를 임의로 생략할 수 있는 규정 개정, 부적격자에 대한 포상 제한 및 포상 시기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포상 취소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포상의 적격성·영예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표창장의 인사위원회 심사를 임의로 생략할 수 있는 규정 개정, 정부 포상 기준을 따르는 조항 신설(안 제10조제2항 및 제4항)
- 부적격자에 대한 포상 제한 규정 신설(안 제10조의2)
- 포상시기의 구체적인 내용 규정(안 제11조제2항)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한 취소 근거와 절차 신설(안 제14조)

4. 근거법규

- 「지방공무원법」 제79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일부 조항을 신설하거나 기준을 명확히 하여 포상의 적격성·영예성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표창장의 인사위원회 심사를 임의로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을 개정하고, 정부포상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조항 및 부적격자에 대한 포상 제한 규정 신설, 포상시기의 구체적인 내용 규정, 안 제14조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한 취소 근거와 절차 신설 등임.
-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 제79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 제반 규정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거법규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령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
2. 법령의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 및 공고 등 행정규칙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지방공단
의 내부규정

② 제1항에 따른 부패유발요인 검토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